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담당자 전미화
전화 032-861-5052

보도자료
2020. 10. 6.(화)

제 목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및 동승자 엄정 처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2020. 10. 6.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2020. 10. 6.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역주행 운행하여 치킨배달 중인 피해자를 충돌,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구속 기소, 동승자를 불구속 기소하였음
-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 동승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운전자 A, 동승자 B

○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 9. 9.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 2 수사경과

- '20. 9. 9. 피고인 A 현행범인 체포
- '20. 9. 14. 피고인 A 구속
- '20. 9. 18. 피고인 A 구속 송치
- '20. 9. 24. 피고인 B 불구속 송치
 - ※ 경찰은 피고인 B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로 입건하여 송치
- '20. 9. 18. ~ 29. 피고인 A, B,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
- '20. 10. 6. 피고인 A 구속 기소, 피고인 B 불구속 기소
 - ※ 피고인 B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로 기소

3] 참고사항

- 인천지검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구속 송치된 피고인 A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별건으로 입건된 피고인 B 사건을 경찰로부터 신속히 송치 받아, 위 두 사건 모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소속 검사 2명을 수사참여검사로 지정하고 사건 전반에 관한 신속하고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였음
- 수사 결과,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 B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관계, 법리검토 및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로 각각 의율하여 피고인 A는 구속기소, 피고인 B는 불구속 기소함
-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임 ☑